

외환파생상품거래 해지 수요 현황 및 거래 실행에 따른 확인서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

지점/부 앞

◆ 년 외환파생상품거래 해지 수요 현황 (기준일자: 년 월 일)

(단위 : 천미불)

구 분 (해당 □란에 체크)	금 액		비 고
	수 출 (투자포함)	수 입 (조달포함)	
택일	<input type="checkbox"/> 과거 수출입 실적기준(년간)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 계약건별 기준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향후 예상 경상/재무거래 등)		
해지대상 금액 합계 (해지비율 분모에 해당)			
기 체결 외환파생상품 거래금액	통화선도 (외환스왑, NDF 포함)		
	통화옵션		
	통화스왑		
	환변동보험 및 기타()		
기해지거래 금액 합계(해지비율 분자에 해당)			

※작성요령

- 동 현황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.(단, 은행 전산조회자료나 기업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서류 첨부 생략가능)
- 기타통화거래의 경우 원화 개재 거래만 포함(이종통화간 거래는 제외)하며 작성기준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 적용하여 USD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산
- 한도 부여 기간은 연단위(1월~12월)로 설정하고 신규 수주 등의 사유로 한도 변경시 재정구할 것



◆ 외환파생상품거래 실행에 따른 확인사항

-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, 귀행과 체결하고자 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가 실수요에 근거한 헤지 목적 거래임을 확인합니다.
- 당사는 귀행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실행증인 외환파생상품거래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,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귀행에 제출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종도해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에서 정한 위험헤지비율 상한 10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파생상품거래를 실행 중이며 이후 발생되는 귀행 또는 여타 금융기관과의 외환파생상품거래시에도 위험헤지비율 상한 이내에서 거래할 것을 확인합니다.
- 또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위험헤지비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귀행에 즉시 동 사실을 통보할 것이며 위험헤지비율 상한 초과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귀행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입니다.
- 아울러 당사는 위험헤지비율 상한 초과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행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위험헤지비율 상한 초과에 따른 귀행과의 협의절차를 해태할 경우 귀행과 실행증인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종도해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확인일자 : 년 월 일

기업명 : (법인등록번호: -)

대표이사 : (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)

